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44
----------	-----

제출연월일 : 2019년 8월 6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개정으로 학원 교습과정에 신설된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애견 훈련’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규정하는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학원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370호, 2018.12.18. 일부개정, 시행 2019.12.19.) : 제3조의3 제1항 및 별표2(학원의 교습과정)

2. 주요내용

가.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에 신설된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과정과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신설된 ‘애견 훈련’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규정 (안 별표 3 및 별표 4)

○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과정에 신설된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기존의 가장 유사한 교습과정인 평생교육직업교육학원의 ‘컴퓨터’ 과정과 동일하게 규정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 별표 4와 같음

[별표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41. 전자상거래,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	--

-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신설된 ‘애견 훈련’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기존의 가장 유사한 교습과정인 ‘애견 미용’ 과정의 시설기준(실습실 70㎡ 이상)에 추가로 교습과정상 필요한 최소한의 교구(10종 이상)만을 추가로 구비하도록 규정
- ‘애견 훈련’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 : 별표4와 같음

[별표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36. 애견 미용·훈련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나) 욕조 2대 이상 다) 드라이어 10대 이상 2) 애견 훈련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나. 평생직업교육학원의 ‘식음료품’ 교습과정의 예시 추가사항 등을 학원 시설 및 설비·교구 기준에 추가 (안 별표 3 및 별표 4)

- 학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평생직업교육학원 교습과정 중 ‘식음료품’ 과정의 예시에 추가된 ‘조리, 제과·제빵’ 과, 교습분야 및 교습계열 중 ‘인문사회’ 에 추가된 ‘자연’ 을 각각 ‘(별표3) 학원의 시설규모’ 기준과 ‘(별표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에 추가해 상위법령과 일관되게 규정함

- 평생직업교육학원 ‘식음료품’ 교습과정의 예시(별표3, 별표4)
 - 바리스타, 소몰리에 등 →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몰리에 등
-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분야 및 교습계열 ‘인문사회’ (별표3)
 - 인문사회 → 인문사회·자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별첨 7]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시설기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교습과정의 분류 등)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제5조
(교습과정별 시설기준)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2])

다. 협의 : 학원 관련 단체(학원연합회, 교습소연합회 등), 교육부, 관내 교육
지원청, 교육청 관련 부서(감사관, 정책·안전기획관, 예산담당관)
등과 협의 완료

라.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1]
- 입법예고 결과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별첨 3]
(입법예고 : 2019. 4. 18. ~ 5. 7., 재입법예고 : 2019. 5. 10. ~ 5. 30.)
- 교육규제심사 : 교육규제 심의 결과 통보서 [별첨 4]
-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별첨 5]
-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평가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별첨 6]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 (제5조제1항 관련)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검정고시	90㎡ 이상	
			보습·논술	7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 지도	70㎡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 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정 보	정 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4와 같음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70㎡ 이상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7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본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 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 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4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 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 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70㎡ 이상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통역, 번역	70㎡ 이상	
	인문사회· 자연	인문사회·자연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응 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 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 컬, 오페라 등)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 비 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은 보통 교과목(정보교과, 예·체능계, 실용 외국어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

실험 · 실습 · 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 · 설비 및 교구

(제5조제3항 관련)

교수과정	시설 · 설비 및 교구	비고
1. 기계 (기계공작, 기계정비, 기계설계, 기계제도)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일반, 건설, 기계설계 과정 가) CAD설계용 개인용 PC 10대 이상 (1인 1대) 나) CAD설계용 프로그램 10copy 이상 다) CAD도면 시연슬라이드 스크린 1대 이상 라) CAD도면 시연프로젝터 1대 이상 2) 메카트로닉스 생산자동화 과정 가) 자동화프로그램용 개인PC 5대 이상 나) PLC실습용 판넬 3대 이상 다) PLC구동 콤프레셔 1대 이상 라) 자동화 제어용 기기 1대 이상 3) 공조냉동, 용접 과정 가) CO ₂ 용접기 2대 이상 나) 전기용접기 2대 이상 다) Ar용접기 1대 이상 라) 용접용 토치, 가스게이지, 그라인더 각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1. 중기운전>	가. 시설 1) 운전실습장 350㎡ 이상 2)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중기 가동완제품 2종 이상 2) 엔진체 1대 이상 3) 중장비 기술교육에 필요한 시험기 및 측정기 10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2. 자동차 <2-2. 자동차정비, 중기>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정비실습실 90㎡ 이상 3)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자동차 3대 이상 2) 가솔린기관 3대 이상 3) 디젤기관 1대 이상 4) 변속기 2대 이상 5) 차동기 2대 이상 6) 차량용 리프트 1대 이상 7) 엔진 중합테스터기 1대 8) 휠바란스 1대 9) 휠얼라이언트 1대 10) 배터리 테스터기 1대 11) 배기가스 테스터기 1대(CO,HC 겸용) 12) 디젤매연테스터기 1대 13) 헤드라이트 시험기 1대 14) 타이어 탈착기 1대 15) 에어컨 가스주입기 1대 16) 중기의 경우 해당 중기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 ·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3. 금속 (귀금속 가공)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산소용접기 2대 이상 2) 마모기 1대 이상 3) 광택기 1대 이상 4) 모루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5) 압연기(전기로러)1대 이상 6) 실습대(4인용 기준) 10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화공 및 세라믹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위험물 분야 과정 가) 위험물 동영상교육용 컴퓨터 5대 이상 나) 위험물 동영상 슬라이드용 스크린 1대 다) 위험물 동영상 교육용 프로젝터 1대 이상 2) 화공, 화학, 세라믹 과정 화공계측, 화학실험기, 화공장치 등기기 5종 이상 3) 화약류제조 과정 화약류의 제조, 분석, 시험에 필요한 기기5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전기 (전기재료, 전기기기, 전기공사)	가. 시설 1) 실습실 90㎡ 이상 2) 전기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동기 특성 실험장치 5set 2) 수전, 송전, 배전실 가) 특고압용 변압기 150KVA이상 3대 나) 특고압용 인터럽터 스위치 1대 다) COS 6대 라) 특고압용 3상 전력용 콘덴서 10KVA 이상 1대 마) 22.9KV용 피뢰기 3대 바) 22.9KV MOF 1set 사) 큐비클 5대 이상 3) 오실로스코프,역률계,절연저항계,전압계,전류계, 주파수계, 전력계(0.2rmq)각10대 이상 4) 실험·실습대(4-6인용) 5대 이상 5) 전기공사 실습 작업판(1200X1800m) 10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통신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정보통신 운용과정 가) 파일 통합장치(Client-server 32port이상) 1대 이상 나) 하드디스크 20GB이상 컴퓨터 1대 이상 다) 프린터 2대 이상 라) 허브(20port이상)1개 이상 2) 정보통신설비과정 가) 모뎀(Modem) 10대 이상 나) 다중송신장치(MUX) 1대 이상 다)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라) 오실로스코프(20MHz 이상) 5대 이상 마) 주파수발진기(100MHz 이상) 5대 이상 바) 주파수카운터(100MHz 이상) 5대 이상 사) 전계강도측정기 5대 이상 아) 신호감쇠기 5대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6. 통신	자) 직류전원 공급기(30V, 3A이상) 5대 이상 차) 비트패턴발생기 2대 이상 카) 프로토콜 아날라이저 2대 이상 다) 정보통신 실습용 컴퓨터 10대 이상 3) 무선설비과정 가)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나) 오실로스코프(20MHz이상) 5대 이상 다) 주파수발진기(2MHz 이상) 5대 이상 라) 주파수카운터(100MHz 이상) 5대 이상 마) 전계강도측정기 5대 이상 바) 신호감쇠기 5대 이상 사) 직류전원 공급기(30V,3A 이상) 5대 이상 아) 스펙트럼 분석기(1GHz 이상) 1대 이상 자) 백터스코프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전자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회로시험기 10대 이상 나) 신호발진기(2MHz 이상) 5대 이상 다) 오실로스코프(20MHz 이상) 5대 이상 라) 직류전원 공급기(30V,3A이상) 5대 이상 마) 트랜지스터수신기 10대 이상 바) 녹음기 10대 이상 사) 조립 및 수리실습에 필요한 공구 10조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전파전자과정 (1)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2) 텔레비전, 패턴발생기(NTSC방식) 1대 이상 (3) 텔레비전 전계강도 측정기 1대 이상 (4) 백터스코프 1대 이상 (5) 고전압계 1대 이상 (6) TV 10대 이상 나) 전자기기과정 (1)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다) 컴퓨터기기과정 (1)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2) 프린터 2대 이상 (3) 보조기억장치 2대 이상 (4) 컴퓨터(PC)기기 10대 이상 라) 영상재생장치과정 (1) “나”목 1)의 공통 설비 및 교구 (2) 전파전자과정의 설비 및 교구 (3) 영상재생장치 10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선	가. 시설 1) 실습실 90㎡ 이상 2) 설계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선박기관 및 선체 1대 이상 2) 일반 공구 20set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항공	가. 시설 실습실 12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항공기정비 및 항공기조립 과정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9. 항공	가) 비행기(4인승이상) 1대 이상 나) 헬리콥터(3인승이상) 1대 이상 다) 항공기용 공랭식 왕복엔진 (1) 수평대향형 4기통 및 6기통 각 1대 이상 (2) 수직 대향형 1대 이상 (3) 성형 1대 이상 라) 항공기용 제트 엔진 (1) 터보-팬 1대 이상 (2) 터보-제트 1대 이상 (3) 터보-샤프트 또는 터보-프롭 1대 이상 마) 리벳건, 드릴링머신 20set 이상 바) 유압, 랜딩기어 등 각 계통 Mock-up 5종 이상 사) 수공구(30종) 20set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토목, 건축	가. 시설 설계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제도판 및 제도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조 2) 측량기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의복, 섬유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재봉기 자수과정 자수재봉기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대 2) 수예, 손자수, 인형, 조화과정에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 양재·한복 과정 가) 미싱 5대 이상 나) 마네킹 3개 이상 다) 오버로크 재봉틀 1대 이상 4) 섬유과정 가) 방사 및 방직기계 설비 2종 이상 나) 정련표백, 염색가공 실습설비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2. 광업자원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화약류관리 과정 화약 및 발파작업에 사용되는 진동측정기, 주철 전류 측정기, 모의발파기기 등 3종 이상의 실습교구 2)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과정 광산보안, 광해방지, 지하자원개발 실습에 사용되는 채광, 탐사, 선광실무용 실습기기 3종 이상 다. 그 밖의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3. 국토개발 (조경, 도시계획, 지적)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도면설계용 제도작업대 10개 이상 2) 삼각자, T자 각각 10개 이상 다. 그 밖의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농림 <14-1. 동물>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 1) 사육과정 가) 사육장 300㎡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14. 농림 <14-1. 동물>	나) 동물 5종 이상 다) 오·폐수 처리장치 1조 이상 2) 박제과정 가) 박제표본 : 어류, 조류, 갑각류 각 5점 이상 나) 박제제작 셋트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set 3) 모피피혁과정 가) 화학약품처리장 : 15㎡ 이상 나) 회전기, 약품집전 탱크전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4. 농림 <14-2. 임업, 원예>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실습지 900㎡ 이상 다. 그 밖의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5. 해양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가) 실습선박(30G/T이상) 1척 이상 나) 환등기 1대 이상 2) 과정별 기준 가) 갑판과 (1) 정박계선기구(양카 2개, 양모기 1개, 비트 1개) (2) 로프 및 와이어로프 100m 각 1개 이상 (3) 나침의 및 청우계 각 1개 이상 (4) 구명대 1대 및 소화기구 종별 각 1개 이상 (5) 수리용 공구 1식 이상 나) 기관과 (1) 디젤기관(30마력 이상) 1대 이상 (2) 기관분해 조립용 공구 1식 이상 (3) 기관수리용 공작기구 1식 이상 (4) 펌프류(원심력, 기아식) 각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6. 에너지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원자로 계측시설, 열관리방사선 실험기기 3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7. 환경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기, 수질과정 가) 대기 및 수질오염 측정기 2대 이상 나) 수질 및 대기환경 분야 실험기기 10대 이상 2) 자연환경과정 가) 생태복원 설계 제도기기 10대 이상(1인 1대 기준) 나) 생물분류, 토양환경과정 실습에 필요한 기기 2대 이상 3)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소음진동측정, 폐기물처리 실무에 필요한 기기 2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8. 공예 (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공작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19. 교통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교통량조사 장비류 2세트 이상 2) 사고분석 및 재현용 기자재류(컴퓨터 및 재현프로그램) 2세트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0. 안전관리	가. 시설 1) 실습실 90㎡ 이상 2) 강의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가스과정 가) 수압시험기 1대 이상 나) 오스타기 10대 이상 다) 파이프렌치, 몽키, 스패너 등 10대 이상 라) 파이프커터기 2대 이상 마) 밴딩머신 1대 이상 바) 바이스 10대 이상 사) 배관 및 용접용 작업대(880X550m/m, 2인용) 5대 이상 아) 가스, 전기용접기 각 2대 이상 2) 건설안전, 산업안전, 산업위생, 소방설비, 인간 공학과정 가) 동영상 슬라이드용 스크린 1대 나) 동영상 교육용 프로젝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디자인 <21-1. 산업디자인>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인테리어디자인과정 가) 제도판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대 나) 실습대(1인용)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다)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2) 그래픽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3) 섬유디자인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컴퓨터 3대 이상 다) 복사 조명대 1대 이상 4) 디스플레이과정. 가) 실습대(1인용)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나) 실습용 쇼윈도우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이상 다) 쇼 윈도우용 마네킹 5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1. 디자인 <21-2. 패션디자인>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디자인 제도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2인당 1대 2) 시청각 기구 1대 이상 3) 모타 미싱 10대 이상 4) 패턴 실습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4인당 1대 5) 인대(마네킹) 5대 이상 6) 컴퓨터 2대 이상(CAD)수업시 2인당 1대 7) 컴퓨터 미싱 3대 이상 8) 오바로크 2대 이상 9) 아이롱 3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22. 이·미용 <22-1. 이용>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이발의자 10개 2) 증기소독기 2조 이상 3) 건발기 2대 이상 4) 이발기구, 면도, 가위 각 10개 이상 5) 대형거울 : 이발 의자수에 상응하는 개수 6)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2. 이·미용 <22-2. 미용>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헤어과정 가) 인두(마네킹) 20개 이상 나) 건발기(드라이) 10조 이상 다) 파마기 20종 라) 미안대(거울) 10조 이상 마) 샴푸대 2대 바) 세면장 및 급수시설 사) 실습대(4인용) 6대 이상 아) 컷트기구 10개 자) 셋팅기구 10개 2) 피부 미용 과정 가) 맞사지 침대 10개 나) 미안대(거울) 10조 이상 다) 세면장 및 급수시설 다. 그 밖의 과정별로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3. 식음료품 (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 가) 조리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4인당 1대 이상 나) 냉장고(1,000L이상) 1대 이상 다) 오븐기 1대 이상 라)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마) 제독시설 2) 제과·제빵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라) 실습대 8대 이상 마)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바) 저울(5Kg 이상) 10대 이상 사)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1대 이상 아) 반죽로라(DOUGH SHERTER) 1대 자) 냉장고(1,000L) 1대 이상 차)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3) 조주, 소믈리에 가) 진열대 4대 이상 나) 조주대 4대 이상 다) 양주병 : 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4) 바리스타 가) 커피머신 1대 이상 나)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 다) 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24. 포장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5. 인쇄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쇄기 2종 이상 2) 제판장비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6. 사진	가. 시설 1) 실습실 70㎡ 이상 2) 암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사진기 4종 이상(1,000만 화소 이상 디지털카메라 포함) 2) 확대기 2대 이상 3) 필름스캐너 1대 이상 4) 디지털프린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7. 피아노조율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정음 작업대 2대 이상 2) 조율 튜너, 튜링 햄머 각 3대 이상 3) 스테이셔, 스프운밴다, 건반 고르기 자, 다이얼 게이지 각 2대 이상 4) 피아노 3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8. 속기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속기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대)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9. 전산회계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산회계용 사무기기 또는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3) 관련 소프트웨어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0.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 기획, 소비자전문상담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1. 텔레마케팅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전화단말기 1대 이상 2) 헤드셋 10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2. 카지노딜러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게임용 테이블(바카라, 블랙잭, 룰렛, 다이사이, 포카) 각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33. 도배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주걱 1인당 1개 이상 2) 도배용 솔 1인당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4. 미장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수평대(레이저 수평계) 3개 이상 2) 미장용 흙손 1인당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5. 세탁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드라이클리닝기계 1대 이상 2) 회수건조기 1대 이상 3) 물세탁기 1대 이상 4) 스팀아이롱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 애견 미용·훈련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나) 욕조 2대 이상 다) 드라이어 10대 이상 2) 애견 훈련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7. 장의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연습대 10대 이상 2) 수의(남, 여 구분)10세트 3) 관 2대 이상 4) 실습용마네킹 5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8. 호스피스, 병원 코디네이터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상 필요한 설비 및 교구	
39. 항공승무원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기내모형: 실습실 내부에 항공기의 내부모형을 15㎡ 이상 설치 2) 거울을 갖춘 화장대 10조 이상 3) 걸음걸이 연습에 필요한 워킹대(마루판 등)설치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0. 청소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스팀청소기 1대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2) 마루광택기 1대 이상 3) 고압세척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1. 전자상거래, 컴퓨터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2. 출판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컴퓨터 5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3. 영상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6mm 디지털 VTR 5대 이상 2) VHS용 VTR 5대 이상 3) 베타캠 VTR 2대 이상 4) 비디오 카메라 또는 캠코더 10종 이상 5) TV 모니터 10대 이상 6) 조명기구 10종 이상 7) 간이 편집 자막기 3종 이상 8) 오디오 더빙용 오디오 set 5종 이상 9) 논리니어 편집기 3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4. 음반(음반제작)	가. 시설 1) 강의실 30㎡ 이상 2) 실습실 가) 녹음 조정실 30㎡ 나) 녹음 스튜디오 30㎡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믹서(32채널 이상) 1대 2) Adat card 1대 이상 3) 앰프 1대 이상 4) 마이크 프리앰프 1대 5) 오디오 컨버터 1대 6) 음향 이펙터 1대 7) 마이크로 폰(녹음용) 1대 8) 모니터 앰프 1대 9) 녹음프로그램 1개 이상 10) 컴퓨터 1대 이상 11) 컴퓨터용 오디오 컨버터 1대 12) Adat & HD Record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5. 영화, 모델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화기술과정 가) 현상실 10㎡ 이상 나) 녹음실 15㎡ 이상 다) 촬영기 및 영사기 각 1대 이상 2) 모델과정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무대장치, 조명장치 각 1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6. 방송	가. 공통 시설 강의실 30㎡ 이상 나. 기본 시설·설비 및 교구 1) 부조정실 가) 기재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스위처(VIDEO SWITCHER UNIT 12CH 이상) 1대 (2) 영상효과기(S.E.G 12CH 이상) 1대 (3)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2CH 이상) 1대 (4) 영상2:1편집기(VIDIO EDIT 2:1EDITOR) 1대 (5) 동기신호발생기(SYNCGENERATOR) 1대 (6) 디지털플레이(DV25급 PLAY DECK) 1대 (7) 디지털녹화기(DV25급 REC DECK) 1대 (8) 베타플레이어(BETACAM PLAYERDECK) 1대 (9) 베타레코더(BETACAM REC DECK) 1대 (10) 문자발생기(COMPUTER GRAPHICS) 1대 (11) 논리니어편집기(NON LINER EDIT) 3대 (12) 파형계측기(WAVEFORM MONITOR) 1대 (13) 위상계측기(VECTOR SCOPE) 1대 (14) 사운드 재생기(CD PLAYER) 1대 (15) MIONOTOR 10대 이상 2) 스튜디오 가) 기재실 3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베타캠 고화질 카메라(BETACAMCAMERA) 2대 이상 (2) EFP용 카메라(CCU 포함) 2대 이상 (3) DV25급 CAMERA 2대 이상 (4) 조명기기(LIGHT, 1KW이상) 5대 이상 (5) 영상 오디어모니터 2대 이상 3) 방송실습제작실 가) 편집실 (1) 기재실 30㎡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LE(liner edit)edit 1:1편집기 2set이상(플레이레코드) (나) S-VHS 또는 DV25급 DECK (다) 논리니어 편집기 2대 이상 (라) 영상스위처(VEDIO SWITCHER UNIT 12CH 이상) 1대 (마) 영상효과기(S.E.G 6CH 이상) 1대 (바)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12CH 이상) 1대 (사) 색 보정기((COLOR CORRECTOR) 1대 (아) 디지털 플레이(DV25급 PLAY DECK) 1대 (자) 디지털 녹화기(DV25급 REC DECK) 1대 (차) 모니터 6대 이상 나) 녹음실 (1) 기재실 60㎡ 이상 (가) 녹음조정실 30㎡ 이상 (나) 녹음 스튜디오 30㎡ 이상 (2) 설비 및 교구 (가) 방송용 음향조정기(AUDIO MIXER UNIT 8CH 이상) 1대 (나) 방송용 녹음기(REEL DECK) 1대 이상 (다) 방송용 녹화기(VTR) 1대 이상 (라) 방송용 반향발생기(ECHO) 1대 이상 (마) 방송용 음향증폭기(P.A.AMP) 1대 이상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46. 방송	<p>(바) 필름편집기(FILM EDITOR) 1대 (사) 방송용 스피커 시스템(SPEAKER) 2대 이상 (아) 영상음반기(COMPUTER DISK ELECTRIC GRAPHIC) 1대 (자) MULTI TRACK RECORDER 1대 (차) CASSETTE DECK 1대 (카) CD DECK 1대 (타) 방송용 음반작동기(TURN TABLE) 1대 다) 야외녹화장비 (1) 방송용 취재용 촬영기(ENG/EFP CAMERA) 3대 이상 (2) 방송용 전기용 조명기(슈피터 LIGHT) 5대 이상 (3) 방송용 휴대용 조명기(SUNGUN) 1대 이상</p> <p>다. 과정별 시설·설비 및 교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합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단, 유선방송인 경우에는 “다”목 11)의 시설·설비 및 교구를 갖추어야 함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2) 방송 제작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방송기술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중 3)의 나)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 아나운싱·리포터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중 3)의 가)를 제외한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 무대미술(무대분장 포함)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목 및 “나”목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외 나) 실습실 90㎡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 편집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 및 3)의 가)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7) 촬영·영상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 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8) 조명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 2) 및 3)의 다)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9) 음향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1), 2) 및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0) 성우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가”목의 공통시설 나) “나”목 3)의 나)의 시설·설비 및 교구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11) 유선방송전송기술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시설 	
46. 방송	가) 시설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1) “가”목의 공통 시설 (2) 기재실 6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영상 및 음향복조기(DEMODULATOR) 각 3대 이상 (2) 영상 및 음향변조기(MODULATOR) 각 3대 이상 (3) 튜너(COMMUNITY SATELLITE, BROADCASTING SATELLITE) 각 1대 이상 (4) 복호기(DECORDER) 1대 이상 (5) 영상분배기(VIDEO DIVIDER AMP) 1대 (6) 음향분배기(AUDIOO DIVIDER AMP) 1대 (7) 칼라화면발생기(COLOR PATTERNGENERATOR) 1대 (8) 주파수대변환기(SCRAMBLER) 1대 (9) 레벨미터(신호측정기) 2대 이상 (10) 채널혼합기 1대 (11) 채널변환기(8CH이상) 1대 (12) 가입자수신기(CONVERTER) 3대 이상 (13) 파형계측기(WAVEFORM MONITOR)1대 (14) 위상계측기(VECTOR SCOPE) 1대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7. 캐릭터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캐릭터 제작 실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3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8. 관광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관광도서 10종 이상 2) 한국지도(1/500,000), 세계지도 3) 실습실 당 고적, 명승지 안내도 각 1매 이상 4) 실습실 당 시청각기구 및 카메라 각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9. 간호조무사	가. 시설 1) 강의실 60㎡ 이상 2) 실습실 4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인체모형 1개 이상 2) 인체해부 및 생리패도 각 1부 이상 3) 시력 및 색맹표 각 1부 이상 4) 신장 및 체중계 각 1개 이상 5) 주사기 20종 이상 6) 소독기 중형 1개 이상 7) 혈압계, 청진기 각 1개 이상 8) 침대 2개 이상 9) 흡입기(Suction) 1개 이상 10) 휠체어 1개 이상 11) 주사실습용 인체모형 12) 인공배뇨셀 13) 기관절개관(Cannula Kit)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0. 펜글씨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책·결상 또는 실습용 탁자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51. 주산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대형주판 1개 이상 2) 속도측정 초시계 1개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2. 음악, 국악, 실용음악(성악)	가. 시설 실습실 8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악기과정 가) 주요 실습용 악기 10대 이상 나) 그 밖의 교습과목 악기 각 5대 이상 2) 실용음악 과정 가) 피아노, 기타, 드럼, 베이스 등 악기 5대 이상 나) 그 밖의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설비 3) 성악과정 가) 현대성악 : 악기 1대 이상 나) 고전성악 : 악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3. 미술	가. 시설 실습실 80㎡ 이상 나. 과정별 설비 및 교구 1) 공통기준 화판 및 화판걸이(이젤) 또는 실습용 탁자 일시수용능력 인원 1인당 1개 이상 2) 과정별 기준 소묘, 수채화(서양화), 한국화(동양화), 디자인, 만화, 포트폴리오, 조소과정, 석고, 정물대, 모포 등 교습과정별로 필요한 교구 5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4. 무용 (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가. 시설 1) 무용실 7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3) 바(bar) (현대무용) 4) 북 또는 장고 등 악기 1개 이상 (전통무용)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5. 댄스	가. 시설 1) 실습실 70㎡ 이상 2) 탈의실 5㎡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음향기기 1대 이상 2) 대형거울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6. 연기 (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연기과정 가) 무대장치 나) 음향기기 다) 조명장치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57. 서예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지필묵 10개 이상 2) 서법도서 1권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8. 도예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실습용 작업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59. 만화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라이트박스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조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0. 화술, 웅변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마이크 1대 이상 2) 연단 및 녹음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1. 마술(매직)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마술 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2. 바둑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바둑판(바둑알 포함) 10조 이상 2) 대형 바둑판 1개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3. 독서실	가. 시설 열람실 12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열람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1인당 1대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첨 1】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 (제5조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수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종류	분야	계열	교수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교과교육학원	입시·검정및보습	보통교과	입시	660㎡ 이상		입시·검정및보습	보통교과	입시	660㎡ 이상		
			검정고시	90㎡ 이상				검정고시	90㎡ 이상		
			보습·논술	70㎡ 이상				보습·논술	70㎡ 이상		
		진학지도	70㎡ 이상		진학지도		7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 이상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 이상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와 같음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와 같음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수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70㎡ 이상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별표4와 같음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수과정	7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수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70㎡ 이상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업,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정	별표4와 같음	평생직업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업,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정	별표4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매, 미장, 세탁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매,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국제화	국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통역, 번역	70㎡ 이상		인문사회·자연	인문사회·자연	통역, 번역	70㎡ 이상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기예	기예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예	기예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율령,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4와 같음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율령,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에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별표4와 같음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육학원 교수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육학원 교수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 비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은 보통 교과목(예·체능계, 실용 외국어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과정을 말한다.

※ 비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은 보통 교과목(정보교과, 예·체능계, 실용 외국어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수과정을 말한다.

현 행

[별표 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5조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23. 식음료품 (<u>바리스타, 소믈리에</u> 등)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 가) 조리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4인당 1대 이상 나) 냉장고(1,000L이상) 1대 이상 다) 오븐기 1대 이상 라)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마) 제독시설 2) 제과·제빵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라) 실습대 8대 이상 마)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바) 저울(5Kg 이상) 10대 이상 사)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1대 이상 아) 반죽로라(DOUGH SHERTER) 1대 자) 냉장고(1,000L) 1대 이상 차)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3) 조주, 소믈리에 가) 진열대 4대 이상 나) 조주대 4대 이상 다) 양주병 : 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4) 바리스타 가) 커피머신 1대 이상 나)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 다) 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 <u>애견미용</u>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2) 욕조 2대 이상 3) 드라이어 10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개정안

[별표 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5조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23. 식음료품 (<u>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믈리에</u> 등)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 가) 조리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4인당 1대 이상 나) 냉장고(1,000L이상) 1대 이상 다) 오븐기 1대 이상 라)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마) 제독시설 2) 제과·제빵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라) 실습대 8대 이상 마)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바) 저울(5Kg 이상) 10대 이상 사)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1대 이상 아) 반죽로라(DOUGH SHERTER) 1대 자) 냉장고(1,000L) 1대 이상 차)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3) 조주, 소믈리에 가) 진열대 4대 이상 나) 조주대 4대 이상 다) 양주병 : 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4) 바리스타 가) 커피머신 1대 이상 나)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 다) 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 <u>애견 미용·훈련</u>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u>애견 미용</u>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나) 욕조 2대 이상 다) 드라이어 10대 이상 2) <u>애견 훈련</u> <u>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u>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현 행

[별표 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5조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41. 전자상거래, 컴퓨터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개 정 안

[별표 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5조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41. 전자상거래, 컴퓨터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u>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u>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첨 2】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5조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학원의 교습과정에 신설된 교습과정(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애견 훈련)을 운영하려는 학원이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 및 교구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므로 비용추계는 해당 없음

4. 작성자

-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 주무관 김희수 (02-3999-513)

【별첨 3】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14조 별지 제5호서식]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건	조 치 내 용				
<p>서울특별시 성동광진 교육지원청 평생교육과 (김만자)</p>	<p>○ 애견 훈련 과정만 운영하는 학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애견 훈련 과정에 필요한 교구를 별도로 규정해야 함 (애견 훈련 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p>	<p>○ 반영 - 애견 훈련 과정만 운영하는 학원의 경우, 10명 이상의 교습자를 대상으로 교습이 이루어지므로 애견 훈련 과정상 필요한 교구를 최소한 10종 이상은 별도로 구비할 필요가 있음</p> <table border="1"> <thead> <tr> <th>교습과정</th> <th>시설·설비 및 교구</th> </tr> </thead> <tbody> <tr> <td>36. 애견 미용·훈련</td> <td> <p>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애견 미용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나) 욕조 2대 이상 다) 드라이어 10대 이상</p> <p>2) 애견 훈련 <u>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u></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td> </tr> </tbody> </table>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36. 애견 미용·훈련	<p>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애견 미용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나) 욕조 2대 이상 다) 드라이어 10대 이상</p> <p>2) 애견 훈련 <u>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u></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36. 애견 미용·훈련	<p>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p> <p>나 설비 및 교구</p> <p>1) 애견 미용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나) 욕조 2대 이상 다) 드라이어 10대 이상</p> <p>2) 애견 훈련 <u>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u></p> <p>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p>					
<p>교육부 평생학습 정책과 (이운식)</p>	<p>○ 신설된 애견 훈련과정도 종전의 애견미용학원에서 시설면적을 추가로 갖출 필요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p> <p>※ <u>애견훈련을 별도의 교습과정으로 규정해 시설면적을 추가로 갖추도록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지 않도록 유의</u></p>	<p>○ 개정안에 기반영됨 - 신설된 애견 훈련과정도 종전의 애견미용학원(실습실 70㎡)에서 시설면적을 추가로 갖출 필요없이 최소한의 애견 훈련과정에 필요한 교구만을 추가로 갖추도록 개정안에 기반영함</p>				

재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 제출 의견 없음 ”	

【별첨 4】

2019년도 제1회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심의 결과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 규제 신설안」

1. 심의안건 : 제2019-1호
2. 개최일자 : 2019. 6. 20.(목)
3. 심의결과 : ‘원안가결’

규제 사무명	신 설 안
학원시설 기준 설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컴퓨터’ 교습과정과 동일하게 규정 ■ ‘애견 훈련’ 과정의 시설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애견 미용’ 과정의 시설기준에 애견 훈련 교습과정 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
[별표4]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41. 전자상거래,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 <u>애견 미용·훈련</u>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u>애견 미용</u> 가)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나) 욕조 2대 이상 다) 드라이어 10대 이상 2) <u>애견 훈련</u> <u>교습과정상 필요한 교구 10종 이상</u>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별첨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	감사관	행정6급	박동환
입안주관부서	평생교육과장	통보일	2019. 5. 13.
관련조문	평가결과	조치사항	
[별표3] 학원의 시설규모 (제5조 제1항 관련) [별표4] 시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5조 제3항 관련)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학원 교습과정에 신설된 정보, 애견 훈련 과정의 시설·설비 및 교구 기준을 규정하는 등 법령 기준 및 운영 실정에 맞게 정비하거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규정을 개정함 ⇒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u>“원안동의”</u> 함	<u>“원안동의”</u>	

【별첨 6】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19A서울교육013			
정책명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평생교육과		
	담당자명	김희수	전화번호	02-3999-513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서명	정책안전기획관		
	담당자명	민경식	전화번호	02-399-9310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9년 05월 09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9년 05월 13일			
<p>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05월 14일</p>				

【별첨 7】

관련법규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약칭 : 학원법)

[시행 2019. 1. 19.] [법률 제1596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1. 19.>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 사. <생략>
2 ~ 6. <생략>

제2조의2(학원의 종류) ① 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교과교습학원: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평생직업교육학원 : 제1호에 따른 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학원의 소방시설은 소방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 12. 21.]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학원법 시행령)

[시행 2019. 12. 19.] [대통령령 제2937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등) ① <생략>

②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같은 시간에 교습을 받거나 학습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인원 10명(「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1명)을 말한다.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② ~ ③ (생략)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학원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관련)

종류	분야	계열	교 습 과 정
학교교과 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과(정보교과, 예·체능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 및 논술
		진학지도	진학상담·지도
	국제화	외국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

			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예능	예능	음악, 미술, 무용
	독서실	독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정보	정보	정보교과에 속하는 교육활동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기타	기타	그 밖의 교습과정
평생직업 교육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반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조경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조리, 제과·제빵, 바리스타, 소블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속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배,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 미용·훈련 ,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국제화	국제	성인 대상 어학, 통역, 번역
	인문사회·자연	인문사회· 자연	대학 편입,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 고시
	기예	기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웅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독서실	독서	학교교과교습학원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 2018.1.4.] [서울특별시조례 제6799호, 2018.1.4., 일부개정]

제3조(학원시설) ① 학원은 교육환경과 보건위생상 적합한 장소에 설립하되, 그 목적을 실현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강의실이나 열람실(「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

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3제1항 별표 2의 특수교육분야 학원의 경우에는 개별실이나 집단실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강의와 실험·실습·실기 등을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행하는 학원의 경우에는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 학교교과교습학원 중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경우에는 보건실, 휴게실 및 체육장(체육시설)
4. 화장실·급수시설
5. 채광시설, 조명시설, 환기시설, 냉·난방시설, 방음시설 및 소방시설
6. 그 밖의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교구와 설비

② <생략>

③ 지하실은 학원의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하고 건물의 한 면 이상이 지상에 완전 노출되어 있고, 유사시 대피 가능한 외부출구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교습과정별 시설기준) ① 법 제8조에 따른 교습과정별 학원의 시설규모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1.4.>

②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강의실을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은 원칙상 이론 강의가 실험·실습·실기 등에 비하여 적게 운영되는 학원을 말한다.

③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험·실습·실기 등이 필요한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별표 4에 정하지 아니한 교습과정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신청자가 제출한 설비와 교구가 해당 교습과정 운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별표 4의 기준으로 본다. <개정 2016.12.29.>

[별표 3]

학원의 시설규모 (제5조제1항 관련)

종류	분 야	계 열	교습과정	강의실, 실습실, 열람실	비고
학교 교과 교습 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보통교과	입 시	660㎡ 이상	
			검정고시	90㎡ 이상	
			보습·논술	70㎡ 이상	
		진학지도	진학상담 · 지도	70㎡ 이상	
	국제화	외 국 어	보통교과에 속하지 않는 교과로서 유아 또는 초 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교습대 상으로 하는 실용 외국어	150㎡ 이상	
	예 능	예 능	음악, 미술, 무용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유아 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시설	120㎡ 이상	
특수교육	특수교육	특수학교 교육과정에 속하는 교육활동	70㎡ 이상		
기 타	기 타	그 밖의 교습과정	70㎡ 이상		
평생 직업 교육 학원	직업기술	산업기본기술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 섬유, 광업자 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 통, 안전관리, 조경	별표4와 같음	
		산업응용기술	디자인, 이용·미용,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 조율		
		산업서비스	숙기, 전산회계, 전자상거래, 직업상담, 사회조사, 컨벤션기획, 소비자전문상담, 텔레마케팅, 카지노 딜러, 도매, 미장, 세탁		
		일반서비스	애견미용, 장의, 호스피스, 항공승무원, 병원 코디 네이터, 청소		
		컴퓨터	컴퓨터(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문화관광	출판, 영상, 음반, 영화, 방송, 캐릭터, 관광		
		간호보조기술	간호조무사		
	경영·사무관리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비서, 경리, 펜글씨, 부 기, 주산, 속셈, 속독, 경매	70㎡ 이상		
	국 제 화	국 제	성인대상 어학	150㎡ 이상	
			통역, 번역	70㎡ 이상	
	인문사회	인문사회	행정, 경영, 회계, 통계	70㎡ 이상	
			대학편입, 성인고시	150㎡ 이상	
	기 예	기 예	국악, 무용(전통무용, 현대무용 등), 서예, 만화, 모델, 화술, 마술(매직), 실용음악(성악), 바둑, 옹 변, 공예(종이접기, 꽃꽂이, 꽃기예 등), 도예, 미 술, 댄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연기(연극, 뮤지 컬, 오페라 등)	별표4와 같음	
독 서 실	독 서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과정에 속하지 않는 독서실	120㎡ 이상		
<p>※ 비 고 : 보통교과 계열 중 보습은 보통 교과목(예· 체능계, 실용 외국어 및 특성화고등학교의 전문교과 제외)의 보완교습을 목적으로 하는 교습과정을 말함.</p>					

실험·실습·실기 등을 요하는 학원의 시설·설비 및 교구

(제5조제3항 관련)

교습과정	시설·설비 및 교구	비고
23. 식음료품 (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가. 시설 실습실 9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조리 가) 조리대 일시 수용능력 인원 4인당 1대 이상 나) 냉장고(1,000L이상) 1대 이상 다) 오븐기 1대 이상 라) 각 요리별로 조리대 1대당 요리에 필요한 교구 1식 이상 마) 제독시설 2) 제과·제빵 가) 빵슬라이서 1대 이상 나) 수직형 믹서(중형) 8대 이상 다) 오븐(용량 : 2장) 5대 이상 라) 실습대 8대 이상 마) 발효실(용량 : 40장) 1대 이상 바) 저울(5Kg 이상) 10대 이상 사) 비중계, 당도계, PH미터기, 수분측정기 각1대 이상 아) 반죽로라(DOUGH SHERTER) 1대 자) 냉장고(1,000L) 1대 이상 차) 실습실당 싱크대 2대 이상 3) 조주, 소믈리에 가) 진열대 4대 이상 나) 조주대 4대 이상 다) 양주병 : 실습용 진열대 1대당 30종 이상 4) 바리스타 가) 커피머신 1대 이상 나) 커피그라인더 1대 이상 다) 로스터(로스팅머신)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36. 애견미용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애견 미용 전용 테이블 1인용 10대 이상 2) 욕조 2대 이상 3) 드라이어 10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41. 전자상거래, 컴퓨터 (정보처리, 통신기기, 인터넷, 소프트웨어 등), 게임, 로봇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1) 컴퓨터 10대 이상 2) 주변기기 1대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61. 마술(매직)	가. 시설 실습실 70㎡ 이상 나. 설비 및 교구 마술 교구 10종 이상 다. 그 밖의 필요한 시설·설비 및 교구	